국토교통부 | 보도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: 2026. 11. 6.(금) 06:00 이후(11. 6.(금) 석간) / 배포 : 2026. 11. 5.(목)

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 등에 과징금 부과 의결

- 시정명령 재위반, 차량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총 5건 약 2.5억 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홍지선)는 11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**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**에서 시정조치명령 재위반 1건, 철도차량 정비조직 무단변경 4건 등 **총 5건**에 대해 **2억 5천 2백 50만 원**의 **과징금 부과**를 **의결**했다.

* 시정조치명령 불이행(서울교통공사 1건 2.4억 원), 정비조직 무단변경(메트로텍 5백만 원, 한국철도공사·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·유진차량 각 2.5백만 원)

□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철도운영기관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「철도안전법」 관련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① **시정조치 명령 불이행**(철도준사고* 보고 누락, 서울교통공사)

*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(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)

○ **서울교통공사**는 철도준사고 발생 시 보고 누락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'25.10월 시정명령①을 받았으나 '26.2월 발생한 철도준사고②를 보고하지 않아 '**철도준사고 보고 의무**'를 **불이행**하였다.

① '24.3 7호선 태릉입구역, '24.11 창동차량기지, '25.1 압구정역에서 승인없이 **정지신호**를 **위반, 선로**에서 **벗어난 사고**(준사고 3호) ⇒ **보고**가 **누락되지 않도록 시정명령**

② '26.2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선로전환기가 비정상 상태임에도 **신호담당자**가 **불법**으로 **회로**를 **변경**하여 진행신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**준사고 유발**(준사고 2호)

* (준사고 2호) 열차가 운행하려는 **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**되는 경우
(준사고 3호)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**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**

○ 이는 「철도안전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**시정조치명령**을 **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**에 해당하여 **서울교통공사**에게 **2억 4천만 원**의 **과징금 부과**를 의결하였다.

② **철도차량 정비조직 변경인증 및 변경신고 미시행**

○ 한국철도공사 등 4개 정비기관은 **정비인력**이 **변경***될 경우 국토교통부로부터 **변경인증**을 받거나 **변경신고**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**임의**로 **변경**된 **정비조직**으로 철도차량을 무단 정비하였다.

* 정비사업장 기준 정비인력이 **10% 초과 변경** 시 **변경인증**, **5~10% 변경** 시 **변경신고**

○ 이는 「철도안전법」 제38조의7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9 제3항, 제75조의11 등을 위반한 것으로, **메트로텍**에는 **5백만 원**의 **과징금 부과**를, **한국철도공사·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·유진차량** 등 3개 철도차량 정비조직은 **각각 2백 50만 원**의 **과징금 부과**를 의결하였다.

③ 위와 별도로, 휴대전화 사용 등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**철도종사자** 35인*의 **행정처분**도 의결하여, 3인에 대하여는 **운전면허 효력정지**(2개월 2인, 1개월 1인), 32인에 대하여는 **경고** 처분을 의결하였다

* 철도사고 발생 2건, 휴대전화 사용 4건, 후속조치 미이행 1건, 승하차 미확인 및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

※ 금일 **심의 의결**된 처분 사항은 **처분당사자**에게 **처분내용**을 **사전통지**할 예정으로 **최종 의견 수렴** 등을 거쳐 **확정**할 예정임.

□ 국토교통부 **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**은 “철도운영기관 등이 **철도안전법**과 **안전수칙**을 **준수**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**법령 위반행위**에 대해서는 **엄중**하게 **조치**할 것이며,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**지속적**으로 **관리·감독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동익 (044-201-4600)
		담당자	서기관	우지훈 (044-201-4616)
		담당자	주무관	임병일 (044-201-463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TOMORROW